



##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

본 문서를 읽고 하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기준

### 목적

본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19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은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기타 유관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체 및 조직의 소유주/운영자, 직원, 하청업자, 벤더, 고객/방문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본 지침은 실내 박물관, 역사 유적지, 수족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활동에 적용됩니다. 본 지침은 또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소매 갤러리를 제외한 예술 갤러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소매점 또는 기념품점(박물관 기념품점 등)도 본 소매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인 레스토랑 및 바는 시설과 위치 등에 관계 없이 모두 DOH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음식 서비스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야외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및 기타 유관 저위험군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해당 시설은 별도 DOH 지침의 적용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침은 폐쇄 대상인 공공 유락 시설(오락실, 볼링장 등), 카지노, 콘서트, 영화관, 공연장 또는 기타 극장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소유주/운영자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요구 사항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페이스 커버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페이스 커버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호를 선포해, 사업 운영자/소유자에게 차량에 따라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의무 사항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뉴욕주 몇몇 지역에서 시작되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안전한 재개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을 검토하고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2020년 6월 12일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사업체는 반드시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뉴욕주의 책임감 있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기준

다음의 최소한의 주정부 기준 및 적용 가능한 연방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저위험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직업안전 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저위험군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적용됩니다. 기관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타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 활동(박물관 운영 사무실 등)과 관련된 안전 지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사무실 근무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방문자 등 모든 사람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기관 입장을 허용하고 고객/방문자를 포함하여 특정 시점의 특정 장소 수용 인원을 점유 인증서에 의해 설정된 최대 수용 인원의 25 퍼센트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조항은 2세 이상이며 이러한 커버 착용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 고객/방문자 등 모든 사람이 서로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기관을 방문한 단체가 동일한 가구 또는 단체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안전 또는 핵심 활동에 더욱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금전 등록기 운영, 물건 이송 및 적재, 엘리베이터 탑승 등), 사람들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직원이 고객/방문객과 접촉할 경우(티켓 판매 등)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타인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항상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페이스 커버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기준 하에서 사용되는 N95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PPE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 6피트 거리 유지가 가능하지 않거나 고객/방문자와 접촉할 때, 공용 공간을 사용하거나 일반 업무(전시 투어, 공용 공간 이동 등)를 수행할 때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직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방향(좌우 및 서로 마주할 경우)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작업 스테이션이나 공간을 공유하지 않도록 작업 스테이션 및 좌석 공간의 수를 제한 및/또는 활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 스테이션 사이의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페이스 커버 또는 물리적 장벽을 제공하고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보건 또는 안전상의위험이 있는 경우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플라스틱 차단벽 설치 등).
  - 책임 당사자는 퇴근 레지스터, 안내 센터, 티켓 키오스크에 직원과 고객/방문자 사이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직원들은 고객/방문자와 접촉할 때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은 OSHA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금전 등록기 뒤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이스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간 또는 차량의 수용 인원은 단일 거주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최대 공간 수용률의 50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환기를 해야 합니다(창문 및 문 열기 등).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밀집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내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계단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시를 좁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각 지역 또는 전시장의 최대 수용 인원을 계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등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든 공용 공간(티켓 구매줄, 엘리베이터 입구, 전시장 앞, 출/퇴근 스테이션, 건강 검진 스테이션 등)에서 6 피트의 거리를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이동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이동 방향을 하나로 유도하기 위해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복잡한 전시장에서 최소 6피트 떨어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커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실내 또는 실외 공용 좌석 공간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한,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에서(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 최소 6피트 떨어져 있도록 좌석 공간 배치(의자, 테이블)를 수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선불 또는 터치 리스 지불 옵션의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 카드, 리워드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고객/방문자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도록 권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DOH 코로나19 표지와 일치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기관 전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가 보건부의 표지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근무지 또는 근무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맞춤형 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사람들에게 다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코와 입을 페이스 커버로 가립니다.
  - PPE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합니다.
  - 코로나19 증상 및 노출, 대응 조치를 보고합니다.
  - 손 위생 및 세척, 소독 지침을 준수합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준수합니다.
  -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전시물이나 물건을 만지거나 취급하지 마십시오.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직원 모임(예: 직원 회의)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2019(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사람들이 교대로 의자에 앉게 하는 등).
-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과 맞지 않는 비필수 편의시설이나 공용 공간을 폐쇄하거나 수용 인원을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권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자동 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등) 인근의 장비 옆에 손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그러한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 표지와 시스템(공간 사용 시 해당 내용 표시)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공용 화장실에 있거나 사용을 기다리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른 통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경우(휴식, 식사, 근무 시프트 시작/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 공간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 스케줄을 교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 C. 근무지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출근 직원을 근무지 필수 인력으로 제한합니다.
  -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현장 인력을 감축합니다.
  - 근무 시프트를 조정합니다(A/B 팀, 교대 도착/출발 시간). 및/또는
  - 전화기, 라디오, 복사기, 프린터, 레지스터 등의 공유물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만들고 타인이 사용하기 전 공용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선된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발권 시 고객/방문자가 도착과 출발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방문 시간 설정을 고려하여(시간별 입구와 출구 등) 혼잡을 방지합니다.

###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 인원 의무 사항을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기관 내의 인구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출입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표지나 마커의 사용 및/또는 줄 관리 장치(스탠친, 줄 거리 마커, 화살표 등)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방문자가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 대기 구역을 배치하여(줄, 주차장 등)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고 구역 내의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접촉(기관을 떠나는 사람의 출구 및 기관에 입장하는 사람의 입구를 지정하는 등) 및 이동(직원이 가능한 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있도록 하는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1) 건물으로의 이동량을 관리 및 점유/수용 인원 제한을 관리하고 (2) 건강 선별 검진을 촉진하기 위해 화재 안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면서 하기의 내용처럼 입구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대기열을 두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송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배송 진행 과정 동안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천 소재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PPE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들이 상품 화물의 이송(배송 운전자로부터) 전후 반드시 손을 살균하도록 합니다(물품 적재 전 반드시 손 살균, 모든 화물 적재 후 다시 손을 살균하는 것으로 마무리 등).
-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 지도, 팜플렛, 가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고객/방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용 전자 장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회용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타인이 사용하기 전 이러한 공유품을 반드시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실제 지도보다 디지털 지도(휴대 전화에서 이용)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용 후 적절하게 소독할 수 있거나 고객이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방문자에게 오디오 헤드셋 및 기타 장비를 임대 및 대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고위험군 인터랙티브 전시(고객/방문자가 물건을 만지거나 착용해야 하는 전시 등)를 중단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동일한 가구 구성원에게만 그룹 투어를 허용하고,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모두 포함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모임에 대한 최대 수용 인원 의무 조항을 항상 준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또는 놀이기구가 있는 전시를 폐쇄합니다. 단, 놀이터 또는 장비를 이용한 어린이가 동일 가구 또는 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사용하기 전 해당 장소 또는 전시장을 청소, 소독, 살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크닉 구역과 벤치가 6피트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폐쇄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직원 또는 보안 요원 배치를 강화하여 모임 규모를 제한합니다.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고객/방문자가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기관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방문자가 2세 이상이고 그러한 커버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고객/방문자가 공용 구역에 있거나 6피트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시설 입장/퇴장, 폐쇄된 좁은 전시장 이용, 직원과 접촉 등), 동일한 가구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6피트 내에서 접촉할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단, 본 내용은 고객/방문자가 2세 이상이고 이러한 커버의 착용을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이 타인과 6피트 내에 있을 때 항상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직원은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고객/방문자와 접촉할 때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하다면 티켓 및 접수 데스크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물리적 장벽(플렉시 유리 또는 유사 소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특정 근무지 활동에 필요한 PPE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구매, 마련,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커버를 직장에서 무료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교체가 필요한 경우 페이스 커버 또는 마스크, 기타 필요한 PPE를 적절하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등),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얼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청소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페이스 커버 의무 사항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근무지 활동에 적합한 페이스 커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95 인공 호흡기는 천 소재 또는 수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은 특정 활동에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페이스 커버를 직장에 공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장비(수술용 마스크, N95 호흡기 또는 안면 보호막 등)를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전시 유지보수 등)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호 PPE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적용 가능한 OSHA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장치와 장비 등 공유품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무역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직원, 고객/방문자가 접촉 전후에 손 위생 절차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퍼센트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공용 구역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입구, 출구, 엘리베이터, 보안/리셉션 데스크 등). 가능한 경우 접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졌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손 살균 스테이션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PPE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건물에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물품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문 손잡이, 티켓 판매소 등)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건물 내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각 시프트 교대 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DOH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표지, 사용 중 표시 마커,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화장실 사용 인원을 감축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인증 소독제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장비 및 도구를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최소한 근무자 교체 또는 새로운 도구 사용 시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엘리베이터, 공용 물건,

건물 입구, 뱃지 스캐너, 화장실, 난간, 문 손잡이, 자판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의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만약 피해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운영을 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 청소 또는 소독 전 24시간 정도 대기합니다. 24시간 대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기합니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시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후 7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물(계산 장비 등), 공용 구역 및/또는 공유 표면(문 등)의 취급과 관련된 소매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구역과 물체를 최소한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 및/또는 고객/방문자가 공유하는 장비 또는 물품(라디오, 지도 등)를 매번 사용 후 세척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음식과 음료의 공유를 금지하고 직원에게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 재개를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음 재개할 때 근무 직원 수, 근무 시간 및 수용 고객/방문자 수를 제한하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 표지 등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PPE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히 구두 소독 및 표지를 통해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한다는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도록 건물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향후 접촉자 추적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 제출을 고객/방문자에게 권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III. 절차

####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하청업자 및 벤더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 조치는 고객/방문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이 건물에 보고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등)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들이 선별 결과가 나오기 전 서로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선별은 최소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하청업자 및 벤더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직원, 하청업자 또는 벤더가 다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 여부.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대한 양성 반응 여부. 및/또는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증상 경험 여부.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선별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만약 공간 또는 건물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우, 건물 입구 또는 입구 근처에서 개인 선별 조치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개인이 선별 및/또는 건물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원격 방식으로 또는 도착하여 바로 선별 검사를 받은 직원에게만 입장을 허락합니다.
  - 체온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물 입구에 비접촉식 열체크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증상자를 식별하고 2차 검진 구역으로 인도하여 후속 검사를 완료합니다. 불가능하거나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체온 검사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보건 선별지를 작성 완료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없지만 고객/방문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을 위해 기록 및 연락할 수 있도록 고객/방문자에게 연락처 정보 제공과 관련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등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변경되는 즉시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과 더불어, 체온 검사는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데이터(개인의 특정 체온 데이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 검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검진 결과(합격/불합격, 확인 이상 없음/이상 있음)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검사를 비롯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현장에 입장하는 직원, 하청업자, 벤더 또는 고객/방문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인원은 최소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 또는 마스크를 포함한 PPE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페이스 실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하청업자, 벤더 또는 고객/방문자는 현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결과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이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 프로토콜 및 정책에 대해 DOH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시프트,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의 설문을 수령하여 검토할 의무를 맡기고 이러한 책임자에게 또한 설문의 내용처럼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경험할 경우 직원이나 고객/방문자의 보고를 받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 기관의 연락 담당으로 지정된 사람은 확진자의 통지를 받고 해당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고객/방문자를 위한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한 책임을 담당하며 현장 안전 모니터를 임명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 및 고객/방문자를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하청업자, 벤더 등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접촉자를 확인,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보건 선별지를 작성 완료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시설에서 현장 직원, 하청업자 또는 벤더가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통보하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직원, 하청업자, 벤더 또는 고객/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기관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과 확진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의 48시간 전부터 시설에 입장했다고 기록된 모든 직원, 하청업자, 벤더를 비롯해 고객/방문자 및 배송 인력(가능한 경우)의 정보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에 있다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의 직원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해당 유증상자의 건물 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유증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관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과 추적 또는 기타 매커니즘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통보 시점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하다면 고객/방문자가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티켓 사전 온라인 구매 시 선택적 참여) 할 수 있는 방법 제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완전한 안전 계획의 개요를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비즈니스 소유주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onavirus (COVID-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다음의 링크에서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